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2. 09. 15. THU

VOL. 1648



목차

contents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1069

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 1079

신법령 목록 ━━━━━━ 1084

인사 ━━━━━━ 1088

규칙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064호 2022. 9. 5.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2조에 따라 지정된”을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중 “제4조 제1항 본문의”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겸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제12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u>제22조에 따라 지정된</u>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p> <p>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p>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 ----- ----- ----- <u>제22조에</u> 따라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
 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
 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
 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
 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
 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
 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
 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2. 정무직 법원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삭 제〉〈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
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 된 기관에게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
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
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
위. 다만, 대법원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하고 청렴
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
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
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
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
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서는 아니 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
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
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
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
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
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
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
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
한다.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
는 아니 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제4조 제1항 본문의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 5. (생략)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친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안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1. -----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현 행

개 정 안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 등 미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겸임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예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312호 2022. 9. 5.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제4조 제1항”을 “제12조의3제1호”로 한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3조의2(단순 민원업무)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의 단순 민원업무는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가목 3), 나목, 다목
을 말한다.

제3조의3(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
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 행동강령 제
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 등
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법관 및 법원공
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
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
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②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4(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법관 및 법원

개 정 안

제3조의2(단순 민원업무) -- 제12조의3제1호

-----.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 시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행동강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행동강령 제4조의6 제2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삭 제><삭 제>

현 행

제10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소속기관의 장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자체 없이 이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3조, 제4조, 제7조, 제17조와 관련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상담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10조(행동강령책임관)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조,

-----.

신법령 목록

(2022. 8. 16.~2022. 8. 31.)

조약

조약 제2513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 공업무에 관한 협정	20313	2022. 08. 16	4
조약 제2514호	만국우편연합현장 제11추가의정서	20321	2022. 08. 26	4
조약 제2515호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	23
조약 제2516호	만국우편연합총칙 제3추가의정서	"	"	161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2869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313	2022. 08. 16	38
대통령령 제3287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 제3287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 제3287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6
대통령령 제328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 제3287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 제3287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 제3287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318	2022. 08. 23	3
대통령령 제32878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 제32879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 제3288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 제3288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 제3288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 제3288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323	2022. 08. 30	4
대통령령 제32884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 제3288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 제3288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 제3288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 제3288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 제32889호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폐지령	"	"	13
대통령령 제32890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 제32891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 제328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총리령

총리령 제82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323	2022. 08. 30	24
-----------	-----------------------------	-------	--------------	----

부령

고용노동부령 제31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0313	2022. 08. 16	65
보건복지부령 제901호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폐지령	"	"	66
여성가족부령 제18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2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314	2022. 08. 17	3
환경부령 제9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국토교통부령 제114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315	2022. 08. 18	4
법무부령 제103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법무부령 제1033호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정령	"	"	19
환경부령 제99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
국토교통부령 제1145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316	2022. 08. 19	4
국토교통부령 제114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0317	2022. 08. 22	3
고용노동부령 제2021-3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0318	2022. 08. 23	21
국토교통부령 제114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319	2022. 08. 24	3
국토교통부령 제114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3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321	2022. 08. 26	217

국토교통부령 제75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219
보건복지부령 제902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	"	"	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323	2022. 08. 30	25
보건복지부령 제904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보건복지부령 제905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44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1
보건복지부령 제90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324	2022. 08. 31	5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환경부령 제1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인사

인사발령 법 제136호

2022. 8.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오석준	대법원 근무를 명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2022. 8. 5.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7호

2022. 8.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겸 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2022. 8. 5.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0호

2022. 8. 1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발령취소			

- 가. 인사발령 법 제129호 중 3. 교육파견(방문과정)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익 2022. 8. 16.부터 2023. 6. 15.까지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 교육 파견을 명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인사발령 법 제141호

2022. 8. 1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익	2022. 8. 16.부터 2023. 6. 1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42호

2022. 8. 1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지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윤화랑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합평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	이지혜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합평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	---

(2022. 8. 16.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3호

2022. 8. 1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학위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보미	2022. 8. 18.부터 2023. 8. 17.까지 영국 런던(LSE)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2. 교육파견(연구과정)			
가.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필복	2022. 9. 16.부터 2023. 8. 31.까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3.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주미	2022. 8. 16.부터 2023. 6. 15.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지은	2022. 8. 31.부터 2023. 6. 30.까지 호주 모나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44호

2022. 8. 1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서윤	2022. 8. 27.부터 2023. 8. 26.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판사	성재민	2022. 8. 23.부터 2023. 8. 22.까지 미국 포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46호

2022. 8. 1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지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방아	"

(2022. 8. 3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8호

2022. 8. 25.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태우	2022. 9. 3.부터 2023. 1. 6.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두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2. 9. 1.부터 2023. 2. 17.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은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2. 9. 5.부터 2023. 2. 24.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가정법원 판사	구창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2. 9. 1.부터 2023. 8. 31.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진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2. 9. 13.부터 2023. 8. 15.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2. 9. 19.부터 2022. 12. 2.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수진	2022. 9. 15.부터 2023. 3. 1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2022. 9. 3.부터 2022. 11. 2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2. 복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유성혜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2. 9. 1.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준혁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2. 9. 1.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2. 9. 8.자)
	"	이고은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2. 9. 3.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영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2. 9. 1.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 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 9. 1.부터 2023. 2. 19.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2. 9. 25.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2. 9. 25.부터 2023. 9. 24.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연정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2. 9. 1.자)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지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2. 9. 28.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3. 파견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국제형사재판소(ICC))	정윤주 이상욱	2022. 9. 1.부터 2023. 8. 31.까지 국제형사재판소(ICC) 파견근무를 명함
4. 복귀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국제형사재판소(ICC))		복귀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2.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0호

2022. 8. 2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	2022. 9. 2.부터 2022. 9.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나.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열	2022. 9. 13.부터 2022. 10.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곤	2022. 9. 13.부터 2022. 10.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형권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수	2022. 9. 15.부터 2022. 10.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라.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석봉	2022. 9. 26.부터 2022. 10.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51호

2022. 8. 30.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복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하경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2. 9. 1.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22. 9. 1.부터 2023.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끝.